각국 증권법에 규제된 거래정보공개제도

리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거기에 정통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128폐지)

현시기 증권시장에 진출하여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통한 대외경제관계를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증권발행 및 거래와 관련한 증권법의 규제내용들을 잘알고 거기에 정통하는것이다. 증권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공개원칙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가지는것은 증권발행과 거래를 국가적리익에 맞게 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개원칙은 증권발행자가 증권을 발행하기 전이나 발행한 후에 법이 정한 요구와 절 차에 따라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투자가들에게 증권가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자 료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 현물상품과 달리 증권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발행자의 재정형편, 경영능력, 신용 등급정형을 료해하지 못한 조건에서는 그 가치를 판정할수 없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으면 증권구매희망자들이 증권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수 없게 되는것은 물론 증권을 구매할수도 없으며 지어 증권시장에 허위증권의 류통과 같은 여러가지 투기, 협잡, 사기행위가 범람하게 된다. 이로부터 각국 증권법에서는 공개원칙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투자가들의 리익을 보호하고 투자환경을 보장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원칙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한다.

첫째로, 공개되는 정보가 진실하여야 한다.

둘째로, 정보공개가 포괄적이며 완전하여야 한다.

이것은 증권가격과 관련한 모든 정보자료가 상세하게 공개되여야 할뿐아니라 사실을 고 의적으로 숨기거나 빼놓아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셋째로, 정보공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과 관련한 정보는 신속하게 접수자에게 전달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서 는 안된다.

넷째로, 공개되는 정보를 일반투자가들이 쉽게 얻을수 있어야 한다.

정보자료는 광범한 투자가들이 쉽게 획득할수 있는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행자는 각이한 선전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알릴 대책을 취해야 한다.

다섯째로, 공개된 정보자료를 일반투자가들이 쉽게 리해할수 있어야 한다.

정보내용을 공개함에 있어서 표현을 통속적으로 간결하게 하여 대중이 쉽게 리해할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일반대중으로서는 리해하 기 힘든 표현이나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원칙은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기

구가 발행하는 증권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의 원칙적요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부기구가 발행하는 증권은 위험도가 낮고 안정도가 높으므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금과리자의 반환에 대하여 별로 우려하지 않기때문이다.

각국 증권법의 증권거래정보공개제도는 바로 이러한 공개원칙의 구현이다.

증권거래정보공개제도는 증권발행인이 거래시장에서 법에 따라 증권감독관리기구와 투자가들에게 자기의 경영상태, 자산상태, 재정상태에 대하여 공개하게 하는 제도로서 거래 시장에서의 공개원칙의 반영이다. 이를 지속정보공개제도라고도 한다.

정보공개는 증권발행에서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에서도 필요하다. 증권의 경우 발행가치와 거래가치가 항상 일치하는것은 아니다. 거래가치는 이러저러한 요인의 영향으로 부단히 변화된다. 따라서 증권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투자가들의 리익을 보호하자면 증권발행정보공개와 별도로 증권거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들을 공개하는 증권거래정보공개제도가 있어야 한다.

거래정보공개는 발행정보공개에 비해볼 때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투자가들에게 증권거래가치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증권발행정보공개가 투자가들에게 발행증권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면 증권거래정보공개는 투자가들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거래가치를 판단할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로, 정보공개가 한차례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단히 진행된다.

증권발행정보공개는 일반적으로 발행당시의 한차례의 정보공개로 끝난다. 그러나 증권 거래정보공개는 발행이후부터 해당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해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 된다. 그것은 증권거래가치가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고정되는것이 아니라 부단히 변하기때 문이다.

셋째로, 정보공개의 내용과 형식에서 발행정보공개와 다르다.

증권발행정보공개는 주로 발행가치를 판단할수 있는 주요정보가 반영된 모집설명서를 비롯한 모집문건의 공개로 이루어진다면 증권거래정보공개는 주로 증권의 거래가치에 영 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들이 반영되는 증권등록정형에 대한 보고, 년도보고, 년도보고들사 이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는 보고, 림시보고 등의 공개로 이루어진다.

증권거래정보공개제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공개해야 할 문건들이다.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공개해야 할 문건들에는 증권등록정형에 대한 보고, 년도보고, 년 도보고들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는 보고, 림시보고 등이 포함된다.

증권법에서는 우선 증권등록정형에 대한 보고를 공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증권등록정형에 대한 보고란 이미 공개발행된 증권을 증권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 할것을 신청하면서 발행인이 증권감독관리기구와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상장과 관련한 구 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문건을 말한다.

증권등록정형에 대한 보고에는 발행기업의 기본형편, 주권의 직접발행 및 간접발행, 리사와 감사, 고급관리들의 주식소유정형, 회사설립, 관련기업 및 관련거래, 주식자본의 구조와 대주주들의 주식소유정형, 회사의 재정회계자료, 리사회의 증권등록정형에 대한 승낙, 증권등록정형에 대한 주요사항. 증권등록정형에 대한 추천의견.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

타 사항들을 반영해야 한다.

증권법에서는 또한 년도보고들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는 보고를 공 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년도보고들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는 보고란 법에 따라 작성하는 회사의 상반년도중의 경영상태 및 기타 각 부문의 기본정형을 반영한 문건을 말한다.

주권이나 회사채권을 상장거래하는 회사는 매 회계년도의 상반년도결속일로부터 2개월안으로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년도보고들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는 보고를 제출하고 공포해야 한다.

년도보고들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는 보고에는 회사의 재정회계보고와 경영형편, 회사와 관련한 중대소송, 이미 발행된 주권이나 회사채권의 변동정형, 회사가 주주총회심의에 제기한 중대사항,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들을 반영해야 한다.

증권법에서는 또한 년도보고를 공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년도보고는 법에 따라 작성하는 회사의 전체 회계년도중의 경영상태 및 기타 각 부문의 기본정형을 반영하는 문건이다.

주권이나 기타 회사채권을 상장거래하는 회사는 매 회계년도 결속일로부터 4개월안으로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년도보고를 제출하고 공포한다.

년도보고에는 회사의 대체적형편, 회사의 재정회계보고와 경영상태, 리사, 감사, 사장 및 고급관리들의 간단한 소개와 그 주식소유정형, 이미 발행한 주권과 회사채권의 정형(회사의 주식을 제일 많이 소유한 10명의 주주의 명단과 소유주식액수),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들을 반영해야 한다.

증권법에서는 또한 림시보고를 공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림시보고는 법에 따라 회사의 중대사건을 반영하는 문건이다. 여기서 중대사건이란 상 장회사에 발생한 증권거래가치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투자가가 알지 못하는 사 건을 의미한다. 상장회사는 중대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곧 그 중대사건에 대하여 증권감독 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고 공개하며 사건의 실상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중대사건에는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경영범위의 중대한 변화, 회사의 중대투자행위 및 중대한 재산구입결정,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권리와 리익,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발생시킬수 있는 계약의 체결, 기한이 될 때까지 중대한 채무를 청산할수 없는 위약사유의 발생, 중대한 손실의 발생, 순 자산의 10%이상의 중대한 손실의 발생, 회사경영의 외부조건의 중대한 변화, 회사의 리사장이나 사장, 1/3이상의 리사의 교체, 회사주식의 5%이상을 가진 주주의 주식소유정형에서의 비교적 큰 변화의 발생, 회사의 자본감소, 합병, 분리, 해산및 파산의 결정, 회사와 관련한 중대소송의 제기, 재판소의 주주총회, 리사회의 결의의 취소,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사항의 출현이 포함된다.

증권거래정보공개제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다음으로 정보공개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이다.

공개된 정보는 투자가들이 증권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 된다. 만일 그러한 정보가 진실하지 못하고 정확치 못하며 완전하지 못하면 투자가는 예상치 못했던 손실을 입을수 있다. 그러므로 각국 증권법에서는 회사가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내용을 규

정하는것과 함께 정보공개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도 규정하고있다. 각국 증권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정보공개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건을 공개함에 있어서 문건에 허위기재 또는 과장하여 기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허위로 기재한다는것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 기재하는것을 말하고 과장하여 기재한다는것은 문건초안작성자가 사실을 과장하여 자기 형편을 투자가에게 선전하는것을 말하며 중대한 사항이란 투자가들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는 련관문건들에 반드시 반영되여야 할 정보를 말하다.

공개된 문건에 허위기재, 과장된 기재가 있거나 중대한 사항이 빠진것으로 하여 투자가로 하여금 거래과정에 손실을 입게 하였다면 발행인, 증권중개회사의 책임있는 리사, 감사, 사장은 련대배상책임을 진다. 발행인, 증권중개회사 및 그 리사, 감사, 사장은 거래정보공개를 책임진 담당자로서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것은 련관공개문건의 작성과 공개에 도움을 주며 공개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공개할 때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련관부문이 규정한 간행물이나 전문출판되는 공보에 실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을 증권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대중이 열람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된 전문일군이 거래정보공개사무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는 응당 전문일군을 지정하여 거래정보공개사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증권감독 관리기구, 증권거래소, 련관증권경영기구, 신문사 등과의 련계를 맺도록 하며 일반대중이 제 기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거래정보공개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증권감독관리기구, 증권거래소, 증권중개기구와 그 일군들은 공개되게 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그것을 공개되기 전까지는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대외경제일군들은 공개원칙을 비롯하여 증권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깊은 파악을 가지고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나가야 할것이다.